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30호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6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

업체명	업종 (영업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오디디컴퍼니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20190006524호)	박*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44번길 62-16, 3층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덕강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20150611107호)	최*균	부산광역시 사상구 농산물시장로 17, 1층
갯잇몰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제20200006661호)	조*규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762번길 16-9, 1층
(주)케이와이 로지스틱	수입식품등 보관업 (제20160004011호)	이*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1로16번길 22
씨엔에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20140128221호)	류*윤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105(3층 318호 암남동, 원양프라자)
전익상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19980137092호)	김*호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29, 4층
(주)펜타리온코리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20140156286호)	박*건	경상남도 양산시 외산길 21-43
확신무역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20110247013호)	이*기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58, 지상 5층
(주)디엔에스코리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20110247576호)	이*필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445번길 15, 지상 2층
켈리컴퍼니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20190006298호)	옥*순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동부로1959번길 11, 1층
주식회사 인아코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20190006468호)	SUTANTO HARTONO	경상남도 진주시 동부로169번길 12(윙스타워) , A동 211호
성원코퍼레이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20190006687호)	송*경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남로17번길 28-1, 102호
Sub-3.com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20080141715호)	정*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68번가길 54(중동, 동남하이츠맨션 지하9호)
매직센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20100607380호)	김*수	경상남도 김해시 장방로335번길 26-23(1동 2층)
(주)제이와이비에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김*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685, 1층

	(제20200006673호)		
제이케이에스 인더스트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20190006499호)	진*진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46-5
주식회사 제이유통 부산지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20190006867호)	이*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 116, 1001호 (전포동, 한신밴오피스텔)
CORAL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20200006932호)	김*호	경상남도 통영시 주전골길 61, 202호

##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오디디컴퍼니 등 15개소)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 감경된 **24만원 납부 가능**
- 과태료 60만원 부과(농업회사법인 덕강, 씨엔에프, 확산무역)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 감경된 **48월 납부 가능**

##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위생교육 미이수(2021년도 보수교육)

##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1항 규정 위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2] ‘과태료의 부과 기준’ 2. 개별기준 가목 규정에 의한 처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5조

##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 **2022. 6. 23.(목)**

나.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에 따른 의견제출 서식

라. 기타사항 :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과태료 부과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납입고지서 발급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9,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